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

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 미네르바 사건은 어떤 면에서 아직도 진행형이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을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조명해 본다.



파리 앵발리드(Hôtel des Invalides)에 위치한 미네르바(Minerva, 로마신화 지혜의 여신) 동상
(출처 : 위키미디어[commons.wikimedia.org]).



글.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는 무죄로 풀려났고 그에 대한 기사는 이제 매스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 미네르바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당시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공익의 개념이나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미네르바 사건의 여진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진행형인 미네르바 사건을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조명해 본다.

외환위기에 이어 또 다시 찾아온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실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을 결합해 만든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팔렸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하면서 한국 같은 신흥국들은 주가하락, 환율급등의 피해를 피해가기 어려웠다. 외환위기에 이어 10여 년 만에 다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2006~2007년 5%대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에는 0.3%로 추락했다.

2008년 집권 첫해부터 광우병 촛불시위

에 이어 금융위기까지 맞은 이명박 정부는 안팎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었다. 자연히 정권 지지율은 떨어졌고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의 간판을 내리는 모습
(출처 : the guardian, 「Lehman Brothers : financially and morally bankrupt」, 2011년 12월 11일자)

미네르바의 등장

이런 배경에서 한 청년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미네르바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의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박대성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당시 30세)은 2008년 봄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 치를 미리 사두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그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환율 증가 전망을 비롯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280여 편의 글을 올렸다.

그중에는 ‘또 환율 사기극을 하는 구나’, ‘달러전쟁=과연 1,100원 저주의 시작인가’, ‘2008년 금융 전쟁의 서곡:한국판 지옥의 묵시록’, ‘개구리 체감경제...우리는 마루타

다들이 진행하는 7일간의 1000개의 공감 이벤트!

경제 토론방

경제 | 베스트

토론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수준	반대	조회	시간
2487806	★노무현 말기 정경교체기에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종락	0	0	0	15:36
2487805	새정치국민회의...	변태리119	0	0	0	15:36
2487804	박정희... 여론조사 지지율...그럼 그정지...별것을 다하네	한고개	2	0	13	15:35
2487803	틀려먹기 대통령!	고은원	0	0	0	15:34
2487802	사회각계 원로 회장, 차 대통령에 국정원 사건 전담규명 촉구	수목토 그리고 나	2	0	8	15:34
2487801	차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적어도 야당도는 되어	골편다	0	0	3	15:33
2487800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다름점!	다들아 숲	2	0	5	15:32
2487799	드디어 등장한 가스통, 왜 등장 않하나 했다.	뽕뽕뽕	3	0	12	15:32
2487798	알버트 아인슈타인...리처기!!!	hcb	1	3	8	15:30
2487797	이런 후보 차기 대통령 100% 당선이다 (H)	대사헌	3	1	11	15:29
2487796	▶▶▶정안정정자 <부정선거>...종가 속속 터진대!! (H)	미네르바	24	0	69	15:27
2487795	정정래를 민주당 대표로 임명시키라 (H)	누다가와영랑	24	1	71	15:25
2487794	###(((강글))) 난은 웃습니다 (H)	5대 선인	22	1	155	15:21

미네르바의 주 활동무대였던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캡처

개구리여?’와 같은 글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출렁거리면서 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자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의 예측 중에는 빚나간 것도 있었지만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의외로 맞아 떨어진 것도 상당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일약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인터넷 스타 논객이 됐다.

네티즌들은 정부보다 그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의 글에 관심을 두지 않던 주요 언론들도 차츰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들은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한 시사방송을 내보냈고 9시 뉴스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신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투자 전문가들조차 그의 정보력과 판단력에 대해 반박하기 힘들다” “그에게서는 환율 프로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등의 보도가 줄을 이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을 ‘고구마 파는 늑대’라고 칭할 뿐,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나 경력 등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당시 정보당국은 떠도는 소문을 취합한 결과 미네르바가 50대 초반 나이에 증권사를 다녔으며 국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모 신문에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공고와 전문대를 졸업했고 당시 30세의 무직 남성이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에서도 전파통신 분야를 공부했고 경제관련 과목은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지구촌 경제와 직업세계’가 유일했다. 경제학 공부는 졸업 후 독학으로 책을 보며 했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짜집기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나중에 검찰이 밝힌 내용이다.

미네르바 체포되다

미네르바의 글을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네티즌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게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바짝 긴장해 그의 글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미네르바의 글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 30일 미네르바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하의 글에서 ‘외환예산환전업무 8월 1일부터 전면중단, 외환보유고 문제없다고 떠들어 대는데 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



2009년 1월 10일 '미네르바' 박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출처: 세계일보,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 2009년 3월 16일자)

면 위로 부상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렸다.

8월말에는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본격적인 미네르바 신드롬이 불기 시작했다.

그 사이 검찰에는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고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김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었다. 장관의 이런 답변 이튿날 박 씨는 요양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12월 29일 미네르바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글 하나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펙은 법적 문제 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2009년 1월 7일, 서울중

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박대성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3일 만인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전기통신기본법은 소위 '미네르바 법'으로 불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미네르바에 대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네르바 체포 규탄 시위
(출처: 한겨레신문, 「미네르바 체포, 한국사회 영상」
2009년 1월 16일자)

무죄로 석방되다

2009년 4월 13일 검찰은 “미네르바 박 씨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단히 자극적인 글을 써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구형 이유였다. 박 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

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썼을 뿐 네티즌을 선동하고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심 공판은 4월 20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박 씨의 글 두 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박 씨가 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 자료와 기사를 종합한 후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삭제했다는 점,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씨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박 씨는 검찰에 체포된 지 100여 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1심에 반발, 4월 24일 항소했으나 이후 2009년 12월 항소를 취하해 박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009년 4월 20일, 무죄로 풀려난 미네르바 박 씨
(출처: 경향신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2009년 4월 20일자)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결정

1심 법원에 제기했던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됐지만 박대성 씨는 이번에는 해당 법조문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대상이었다. 2009년 5월 14일이었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전기통신법상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가 ‘허위 명의’를 의미하는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적용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0년 12월 28일 나왔다. 현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

을 내렸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대현 · 김희옥 ·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렸다. 이강국 · 이공현 · 조대현 · 김종대 · 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조문의 효력은 바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정 당시 동법 조항에 의해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사법처리를 면했다. 특히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명은 모두 현재 결정으로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됐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경
(출처 : 헌법재판소 블로그[blog.daum.net/c_court])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성향 단체나 인사들은 현재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었다”며 현재 결정을 환영했다.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졌다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법 조항을 당시 정부가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미네르바를 구속하는데 악용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근거법이었던 만큼 현재 결정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은 당시 일본의 ‘공익’에는 어긋났겠지만, 당시 우리 민족과 역사에는 ‘공익’에 부

합하는 행동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며 현재 결정을 환영하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냐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거짓말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의 기본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결정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허위의 통신’은 그 주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를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봐 의견표명이나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의미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허위라는 개념이 애매하지 않고 비교적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고영주 변호사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란 진실인 경우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300여 개의 800여 개 조문에서도 공익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체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상황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법조문을 찾아보면 과거 위헌결정을 받았던 제47조 제1항은 그대로 살아있다. 물론 해당 조문의 효력은 2010년 현재의 결정으로 당시에 이미 중지됐다.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해당 조문에는 2010년 12월 28일 위헌결정이 났다는 각주도 달려 있다. 2010년 현재 결정 후 법무부는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문 개정작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 개편에 따라 주무부처가 바뀐데다 국회도 이후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이 법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 3개 부처였으나 현재는 정부조직이 바뀌어 소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다.

18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대체법안은 크게 두 갈래였다. 첫 번째는 전쟁, 테러 등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한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방향이었다. 또 다른 갈래는 경제·무역·재정 등 구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경우까지 확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을 손질하자는 안도 있었고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안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두아 의원 등 10명은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전쟁·사변·교전 등 무력충돌 △내란·폭동·테러 △국방·외교 △식품·환경 △보건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토록 했다. 이들 의원은 외환보유액 규모를 허위로 퍼뜨리거나, 경제정책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위기설을 퍼뜨리는 경우도 구체적인 처벌 사례로 규정했다. 다른 의원입법 움직임 역시 있었으

나 이들 법률안들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새 정부와 19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적극적인 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개정이 추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한정시킨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국방·외교, 식품·환경,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전쟁·사변·교전, 내란·테러 등 비상상황이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상황일 때로 한정시킴으로써 감시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대성 씨 근황

2009년 4월 무죄로 풀려난 뒤 박대성 씨는 국내는 물론 몇몇 해외 언론과 인터뷰



미네르바 박 씨가 쓴
〈미네르바의 경제 전쟁〉

도 하고 일부 신문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1 경제대전망〉, 〈미네르바의 경제 전쟁〉 등 책도 몇 권 썼다. 하지만 그는 수감 이후 온갖 협박 전화와 수감 시 충격 등으로 인해 체중이

40kg이나 빠지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박찬중 변호사가 2010년 9월 공개한 그의 사진은 구속 당시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다.

박 씨는 2012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09년에 비해 40kg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또 자신이 가짜라는 글을 인터넷

에 올렸던 네티즌을 고소, 유죄판결을 받아 낸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승소하기도 했다.

미네르바 사건이 남긴 것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에 대한 법적처리는 2009년~2010년 모두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무엇을 허위사실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그대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직도 관련 법의 개정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의 구속이나 현재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를 묻는 질문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답했다가 곤혹을 치른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소장 후보자가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었다. 미네르바 기소 당시 그는 대검 공안부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소장은 “법 규정 자체가 문리 해석상 기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현재의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

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때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이동흡 씨 역시 미네르바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의 위헌심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그랬던 그가 현재 소장 후보로 지명되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그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 등이 겹쳐 결국 사퇴했지만 우리사회가 아직도 미네르바 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